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09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김기현·강승규·이양수

최수진 • 최은석 • 정희용

유상범 • 곽규택 • 이만희

송언석 • 한지아 • 유영하

박성민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.

반면,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 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 을 기하고자 함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3년"을 "5년"으로, "사람"을 "사람 중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	2
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	
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	
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	
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	
있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
후 <u>3년</u>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	<u>5년</u>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
록대장에 올라 있는 <u>사람</u>	사람 중 대
	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
	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
	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
	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
	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
	<u>민</u>